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6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6월 3일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6월 3일

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

최병윤·김양희·박종성
유완백·정지숙·이광진의원

1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의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을 통하여 충청북도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과 도서관 시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며,
- 이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대표도서관을 설립·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충청북도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대표도서관의 책무, 설치, 소관업무 및 자료제출(안 제4조 ~ 제7조)
-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임기(안 제9조 ~ 제10조)

-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회의 등(안 제11조)
- 업무의 위탁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해당부서 검토(별첨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2011.5.13~6.2(제시의견 없음)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,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충청북도 대표도서관”(이하 “대표도서관”이라 한다)이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충청북도의 도서관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.
2. “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”란 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.

제3조(충청북도의 책무) 충청북도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·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장 충청북도 대표도서관

제4조(대표도서관의 책무) 대표도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,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.

제5조(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.

② 법 제22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·운영되지 않는 경우, 「도서관 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6조(소관 업무)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
2.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
3.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
4. 그 밖에 충청북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자료의 제출) 법 제26조에 따라 시·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, 그 발행

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과 그 소속 행정기관
2. 도 및 시·군 소속 공사 및 공단
3. 도 및 시·군의 출자·출연 법인
4.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·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·개인·단체

제8조(운영규칙)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

제9조(설치) 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는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회

의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충청북도 도서관정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제13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운영규칙 등)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15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취

□ 도서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공공도서관"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·문화활동·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공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 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체 및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사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원의 조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22조(설치 등) ①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업무)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·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제공
2.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

3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4.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
5.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
6.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

제24조(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·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(이하 "지방도서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2.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·주재한다.

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5조(운영비의 보조)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·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6조(도서관자료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

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·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도서관법 시행령

제15조(지역대표도서관 설립·운영 등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9.21>

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
2.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
3.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
4.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
5.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

제16조(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)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(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을 준용한다.